북극해항로에 관한 러시아 국내법 검토

극지연구소

박 성 욱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해양정책영토연구실

목차

● 북극해항로관련 러시아 국내법령 개관

● 북극해항로관련 러시아 국내법령 분석

• 맺음말

북극애항로관련

극지연구소

러시아 국내법령 개관

북극해항로관련 러시아 국내법령

기 부극해항로 수역에서의 상선 항해에 대한 정부규제 부분에 관련된 러시아연방의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2012년 7월 28일 제정, 2013년 1월 27일 시행)

북극해항로 상선 항해에 관련하여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던 쪼항들의 일부 개정을 꾸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 무요내용 : 북극해항로의 상선 운항에 관련된 일부연방법률의 개정
- 『러시아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률』 제14조 개정 PR
 - → 북극해항로 쪼항의 내용 변경
-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일부 조항 개정
 - → 북극해항로상의 상선항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방법률의 형태인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상에 규정
- 『까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제4조 제1항 개정
 - → 국영기업을 통한 관리를 나타내는 '자연독점'의 개념에 왜빙전 파견 및 결빙구역 도전사 파견 내용 추가

- 의의 : <u>북극해항로</u>를 끽접적으로 규율하는 러시아 <u>최초의 연방법률</u>
 - · 본 연방법률제정 이전마지 북극해항로의 선박항해에 관한 실밀적인 법령은 『북극해항로관리국규정』(1971) / 『북극해항로 운항규칙』(1990) 등이 있음
 - · 이들은 연방법률이 아닌 연방정부명령(러시아 교통부령)에 불과하여 관련된 다른 연방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부쪽
 - · 본 연방법률 제정을 통해 북극해항로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계적이고 통합된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2. 『러시아연방의 내수, 영해 그리고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률』

(1998년 7월 17일 제정, 1998년 7월 31일 시행)

제14조(북극해항로 수역에서의 항해)상에
 북극해항로 항해 쪼항을 둠으로써 북극해항로에
 대한 관할권이 러시아에 있음을 선언함.

제14조(북극해항로 항해) 러시아연방의 역사적인 민족 교통수단인 북극해항로 수역에서의 항해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조약, 본 연방법률,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다른 연방법률 및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 3. 『러시아연방 배타꺽경제수역에 관한 연방법률』
 - (1998년 11월 18일 제정, 1998년 12월 17일 시행)
 - 제32조(빙하지역의 보호 및 보존) 빙하지역 규정을
 통해 연안국의 권리로서 북극해항로에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제32조(빙하지역의 보호 및 보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으며, 특히 연중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있는 환경적으로 악조건인 지역과 관련하여 선박 항해에 대한 장애는 상당한 위험을 유발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의 오염은 생태균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파괴시킨다. 러시아연방은 해양자원 오염 방지, 중지 및 관리 보전을 목적으로 연방법, 그 외 기준 법령을 입법하고 그 준수를 책임질 수 있다. 연방법과 그 외 기준 법령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의 항해 및 해양환경과 자연 자원을 보호,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

(1999년 3월 31일 제정, 1999년 4월 30일 시행)

- 북극해항로상의 <u>상선항해에 관한 제반사항을</u> 연방법률의 형태인 본 법령상에 규정
 - · 북극해항로 수역의 범위 규정(제5쪼의1 제1항)
 - · 하위법령으로서 『북극해항로수역 운항규칙 』 제정 (제5쪼의1 제2항)
 - · 북극해항로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꼬직(북극해항로사무국) 설립(제5쪼의1 제3항)
 - · 해사감독관의 선박 통제(제79조), 침몰자산 처리(제107조), 해상보험(제247조 및 제249조) 등

5. 『북극해항로 수역 운항규칙』

(2013년 1월 17일 제정/시행)

- 1990년 제정된 『북극해항로 운항규칙』을 대신하여 제정된 러시아 교통부령으로, 북극해항로 전박운항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규칙/규정 수립
 - · 북극해항로 수역 선박운항 절차
 - · 북극해항로 수역 **쇄빙선 도선규칙**
 - · 북극애앙로 수역 결빙구역 도선규칙
 - · 북극해항로 수역 항로 도선규칙
 - · 북극해항로 수역 선박항행을 위한 수로 및 수문기상 서비스제공 규정
 - · 북극해항로 수역 운항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규칙
 - · 항행안전 및 선박기인 해양오염호보에 대한 선박요건
 - · 북극해항로 수역 선박운항 담당기구에 관한 기타사항

북극해항로관련

극지연구소

러시아 국내법령 분석

1. 북극해항로 개념 및 범위의 깨껑립

1) 개념 변경

	1998년 '영해법'상 북극해항로의 개념	비고
변경 전	"빌키츠키 해협, 쇼칼스키 해협, 드미트리 랍테브 해협, 사니코프 해협을 포함하여 북극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역사적으로 유일한 민족 교통수단인 북극해항로"	4개 해협에 대한 국제해 양법상 지위 문제
변경 후	"러시아연방의 역사적인 민족 교통수단 인 북극해항로 수역에서의 항해"	4개 해협 문구 삭제, '유 일한' 문구 삭제

- '역사적 수역 ' 으로서 **내수(러시아)** vs 국제항행용해협(미국 등)으로 해양법앙의 지위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4개 해협에 대한 표현 삭제
 - ※ 4개 해협에 대한 '역사적 수역'・'내수' 등의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님

2) 범위 변경

	수역 범위	비고
변경전	결빙지역에서 선박을 인도하기에 적합한 해 로를 포함하여 소비에트연방의 북쪽 해안에 인접한 내수, 영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 (1990년 『북극해항로 운항규칙』제1조 제2항)	배타적경제수역 외측 공해까지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관할권 문제 제기
변경후	러시아연방의 북부 연안에 인접하여 있는 수역으로서 러시아연방의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아우르는 수역(『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제5조의 1)	문제가 되었던 결빙지 역에 대한 문구 삭제

- 1990년 『북극해항로 운항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북극해항로 '
 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여짐
- ⇒ 북극해항로의 개념/범위의 재정립은 러시아가 관할건확장을 위한 무리한 꾸장보다는 북극해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법상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됨

- 2. 북극해항로의 관리·운영 및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연독점법 개정을 통해 북극해항로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서
 법적 권한 부여
 - 북극해항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러시아정부의 <mark>깨껑투입</mark>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북극해항로사무국의 지위 변경

- 현재 러시아연방 교통부 해운하천교통국 산하 일개 부서로서 운영되고 있는 북극해항로사무국을 독립된 연방정부기구 형태로 지위 변경
- 작년 제정된 '북극해항로 연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위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금년 3월 15일 메드베데프 러시아총리의 명령
 (Decree)을 통해 북극해항로사무국 설립 완료

4.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 해결

- 북극해항로 수역에서 러시아가 제공하는 쇄빙선 도선 및 결빙구역 도선에 대한 비용은 선박의 용적톤수/대빙등급/해당선박의 도선거리/항해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양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러시아연방 장선항해법』제5쪼의1 제5항)
 - 이에 따라, 과거 북극해항로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

- 5. 북극해항로에서의 운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
 - 상선항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러시아연방 상선 항해법』상 항구 국가관리(선박 통제), 침몰까산, 해상보험계약 등의 부분에 북극해항로 수역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이를 통해, 북극해항로 수역에서 운항하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사항과 선박기인 오염과 같은 문제 발생시 처리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맺음 말

- 북극의 항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관할권을 확고이하고 북극해항로를 이용한 상선항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북극해항로연방법' (2012) 및 '북극해항로 수역 운항규칙'(2013)을 제정하였음
- ●북극해항로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러시아는 국내는 물론 외국선박의 항로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원개발 및 환경보호에 대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맺음말(계속)

- 북극항로 개책 및 항로이용 활정확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금년 여름경 국내 전사를 중심으로 북동항로(북극해항로)를 이용한 상전시험 운항이 계획되는 등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 북극해항로에 관련된 러시아 국내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북극항로에 관련된 해양선진국의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 북극항로의 이용에 우리나라 또한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